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16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2.

발 의 자 : 송재봉 · 박정현 · 김남근
허성무 · 민병덕 · 김문수
강준현 · 황명선 · 이재관
이주희 · 이광희 · 이연희
이훈기 · 김우영 · 남인순
이수진 · 이용선 의원
(17명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가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1인이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근로소득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업을 병행하는 등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,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. 이에 따라 다중사업자 선별, 부업사업자의 확인 등 보다 정밀한 자료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중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, 매

출액·수입금액, 현금영수증·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,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,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3항).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”를 “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
 - 가. 상호, 대표자(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)의 성명, 사업장 소재지·전화번호
 - 나. 개업일, 주업종, 부업종
 - 다. 폐업일, 폐업 신고일, 휴업 시작일·종료일, 휴업 신고일
2.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
 - 가. 법인명, 대표자(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)의 성명, 사업장 소재지·전화번호, 법인등록번호
 - 나. 사업 개시일, 주업종, 부업종

- 다. 폐업일, 폐업 신고일, 휴업 시작일·종료일, 휴업 신고일
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
 4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8조·제49조 및 제67조, 「소득세법」 제78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60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매출액·수입금액에 관한 정보
 5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,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, 「소득세법」 제163조제1항 후단 및 「법인세법」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
 6.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) ①·② (생략)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<u>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.</u> 1. <u>상시 근로자 수</u> 2. <u>매출액</u> 3. <u>자산총액</u>	제36조(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에 따른 <u>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.</u> 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<u>다음 각 목의 정보</u> 가. 상호, 대표자(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)의 <u>성명, 사업장 소재지·전화번호</u> 나. <u>개업일, 주업종, 부업종</u> 다. <u>폐업일, 폐업 신고일, 휴업 시작일·종료일, 휴업 신고일</u> 2.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

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
목의 정보

가. 법인명, 대표자(공동대표
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
한다)의 성명, 사업장 소
재지·전화번호, 법인등록
번호

나. 사업 개시일, 주업종, 부
업종

다. 폐업일, 폐업 신고일, 휴
업 시작일·종료일, 휴업
신고일

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 또
는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에
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
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

4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8조·
제49조 및 제67조, 「소득세
법」 제78조 또는 「법인세
법」 제60조에 따라 사업자가
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매
출액·수입금액에 관한 정보

5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
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
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,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에

④ (생략)	<u>다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,</u> <u>「소득세법」 제163조제1항</u> <u>후단 및 「법인세법」 제121</u> <u>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</u> <u>산서 발급액</u> <u>6.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에 따</u> <u>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상시</u> <u>근로자 수</u>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	---